

#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안내

## ■ 신혼부부 ·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(사전서류 접수기간 內)

해당자격		소득입증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(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) ※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(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)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	① 해당직장/세무서 ② 해당직장
	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	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직인날인)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, 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②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 ※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"주(현)" 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, 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 지급조서) ※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	① 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, 간이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사업자등록증	①, ② 세무서
	간이 과세자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※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제출	① 세무서
	신규사업자 (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)	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※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	① 국민연금공단/세무서 ② 세무서/등기소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법인등기부등본	① 세무서 ② 등기소
보험모집/방문판매		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③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 세무서 ②, 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	① 주민센터
일용직, 비정규직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※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	① 건본주택비치 ② 세무서/홈텍스

## ■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인증 제출서류

서류구분	확인자격	증빙 제출서류	발급처
자격 입증서류	근로자	①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해당직장/세무서
	자영업자	② 사업자등록증	
	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(2020.05.14 ~ 2021.05.14)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	③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(납부내역증명 포함) (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)	
소득세납부 입증서류	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(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(2020.05.14 ~ 2021.05.14)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)	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서(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) 및 납부내역증명서(종합소득세 납부자)	① 세무서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청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  
※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거나,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우선 적용됩니다.